

배포 일시	2022. 11. 9.(수)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관	책임자	팀 장 조은혜 (044-201-4760)
	자동차운영보험팀	담당자	사무관 김동규 (044-201-4861)
보도일시	2022년 11월 1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9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

- '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 이용을 인정하는 경우' 축소, 11.14일 시행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「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」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, 그간 ① 치료목적(예 : 전염병 등),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(7일 이내)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*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입원료**는 병실등급과 관계 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.

* 병실등급 : (상급) 병원급: 1인~ 의원급: 3인실 (일반) 4~6인실

** 병실입원료 : (상급) 3만~ 40만원/일, (일반) 약 3~4만원/일

- 그러나,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,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.('21.9,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, 관계기관 합동)

* (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) '16년 15억원 → '20년 110억원 → '21년 343억원

○ 개정안은 ‘① 치료목적’의 경우는 **현행대로 유지**하되, ‘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’를 **병원급에만 적용**하고 의원급에는 **적용 제외**한 것으로,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(입원)과 의원급(통원)의 시설·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“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”면서,

○ “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,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※ 고시문은 11월 14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행정규칙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